



·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·

I '장애등급'은 '장애정도'로 변경



I 장애인의 욕구와 실태 파악 강화



- ✓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조사
- ✓ 「서비스 지원 종합조사」 도입과 단계적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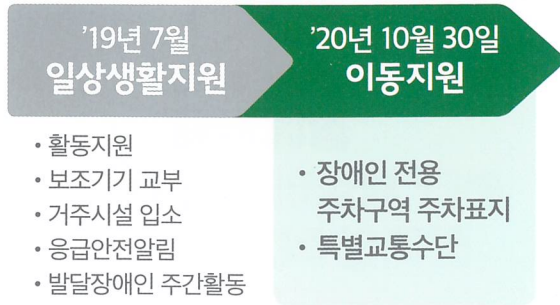
I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



- ✓ 민과 관이 협력하여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 강화
 -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동행상담
 - 시·군·구마다 「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」 구성 및 운영

·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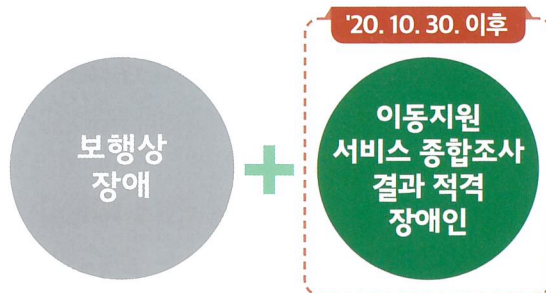
I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



- ✓ 2020년 10월 30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
- ✓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,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 체계

I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이동지원 서비스*대상 확대

(기존) 보행상장애 + ('20년 10월 30일)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한 경우



* (이동지원 서비스)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, 특별교통수단

I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

-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, 특별교통수단
- 대 상 자 현행 '보행상 장애기준'에 해당하지 않는 '중복장애인'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
- 의 료 방 법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
- 구 비 서 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

장애유형	제출 자료
지체장애	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, 지체장애용 소견서
뇌병변장애	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, 뇌병변장애용 소견서
시각장애	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, 시각장애용 소견서
그 외 12개 장애유형	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

- 12개월 이내 발급받은 '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'로 대체 가능

- ✓ (조사결과)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 (성인 7개, 아동 5개)를 조사하여,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"이동지원 서비스 지원"

